



현장소장이 임시직인 안전관리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임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의 근로자 안전에 관한 건의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즉 대표자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이 근로자 안전에 관한 안전관리자의 적정한 건의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산업재해는 전적으로 현장소장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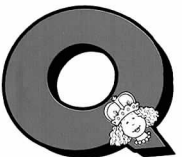


1999년 9월에 착공한 건축공사로 2002년에 준공예정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적용시기를 개정된 법규를 무시하고 착공한 날짜에 합당한 “고시 제 99-11호(1999. 6. 3)”를 준공시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정된 법규(고시 제 2000-17호, 고시 제2001-22호)를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업 등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혹은 자체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혹은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 공사계약 체결시점이 99. 6. 3 부터 2000. 5. 21 이내 기간이라면 고시 제99-11호(99. 6. 3)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력센터에 등록된 등록자로 부개동 식당에서 일을 하게되던 중 뜨거운 물에 오른쪽 안면부 2도와 왼쪽손 2도 손가락 3도로 전체적으로 2~3도 정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식당 사장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 등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력센터에 이름을 등록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 근무 또는 일용근로에 해당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031-441-7193~6)에 제출하면 동 기관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산재보상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실 부지를 위해 안전 헨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안전 헨스를 차후에 중장비 작업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헨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구입한 안전 헨스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된 안전 헨스는 도로의 측면에 설치된 것으로 구획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1차 목적이긴 하나 외부통행 차량으로부터 구획 내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바 이 경우에는 안전 헨스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요.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공사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헨스를 외부통행 차량으로부터 구획내 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도로와 현장구획을 정하고자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차후에 현장내에서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에 사용할 때 헨스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고, 헨스를 당초 구입시 외부차량과 현장을 구획하는 용도로 구입한 것이므로 차후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헨스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안전관리비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안전헨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현장내에서 개구부나 맨홀등에 설치하는 것이어야 하고 현장에서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입한 헨스만이 인정되며, 도로 확 ·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로 사용되는 헨스는 표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별표4에 보면 40억미만은 공사기간 중 월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30억원의 도급공사에 있어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경우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30억원의 도급자로부터 12억의 하청을 받아 하청업체가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경우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대상 공사의 사업주가 영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영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경우(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의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는 기술지도가 제외됩니다.



영 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주란 당해 사업장의 전체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업주를 말하며 일부 공종 또는 공종을 수급 받은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